

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1998. 9. 18

나. 제 안 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1998. 9. 18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64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3차 총무복지위원회(98. 9. 19) 상정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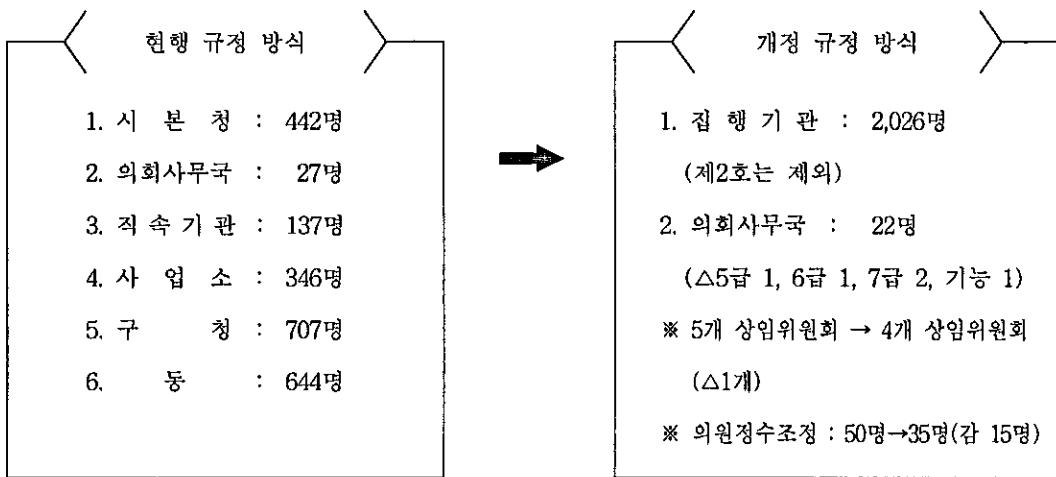
(제안설명자 : 총무국장 강석준)

가. 제안이유

-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(자치 12200-1252, 98. 6. 23)이 시달됨에 따라
- 21세기 본격 자치화, 정보화시대에 대비함은 물론 당면 경제사회 환경에 부응하기 위하여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조직으로 개편하고
-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기능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제21조(대통령령 제15,875호, 98. 8. 31)에 의거 「정원관리기관별 규정」 개선



- 집행기관 및 의회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말함 (안 제2조)

구 분	현 행	개정안	증 감
계	2,303	2,048	△255
집 행 기 관 (본청, 직속기관, 사업소, 구청, 동 포함)	2,276	2,026	△250
의 회 사 무 국	27	22	△5

-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정합 (부칙 제2항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○ 부천시 의회사무국 직원을 22명으로 정한 근거는	○ 의원수가 50명에서 35명으로 줄어 그에 비례하여 산출한 것임
○ 의원수가 줄면 업무량이 적어졌다고 보는지	○ 업무량보다는 1개 상임위원회에 5명 정도면 일해나가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였음
○ 타·시군과 비교하면 어떤가	○ 수원은 의원수 33인에 사무국 직원 23명, 안양은 의원수 30인에 사무국 직원 24명임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- 부천시 의회사무국 직원 정원을 27명에서 22명으로 5명 줄이는 것은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11.08% 기준 원칙에 어긋나고 타·시군과 비교하여도 형평에 맞지 않아
- 집행부에서 고수하고 있는 11.08%를 지키면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쳐사라 판단하여 의회사무국 직원 정원을 24명으로 수정하는 데 찬성

나. 반대토론

- 의회사무국 직원 정원을 27명에서 26명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음

5. 심사결과

○ 수정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의안번호	관련 제31호
의결년월일	98. 9. 22 (제64회)

제출년월일 : 1998. 9. 21

제출자 : 총무복지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부천시의회가 집행부의 잘못을 따지려면 어떤 원칙에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론을 세워 놓고
- 행정기자부와 집행부의 기준인 11.08%를 지켜준다면 커다란 이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현정원 27명 중 11.08%인 3명을 감원하여 정원을 24명으로 수정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-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국의 정원을
 - 집행기관은 2,026명에서 2,024명으로
 - 의회사무국은 22명에서 24명으로

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부천시지방공무원조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

안 제2조(정원)제1호중중 “2,026명”을 “2,024명”으로 하고, 제2호중 “22명”을 “24명”으로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신·구조문 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제2조(정원) 부천시에 두는 집행기관의 정원 및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	제2조(정원) 부천시에 두는 집행기관의 정원 및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
1. 집행기관 : <u>2,026명</u>	1. 집행기관 : <u>2,024명</u>
2. 의회사무국 : <u>22명</u>	2. 의회사무국 : <u>24명</u>

[수정안포함]

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

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원) 부천시에 두는 집행기관의 정원 및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집행기관 : 2,024명

2. 의회사무국 : 24명

제3조(직급별 정원의 규정)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국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 다만, 별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,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유예기간을 인정하여야 할 경우에 한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할 수 있다.